

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5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9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1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7. 21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0 리의 하부조직인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 행정 여망 사항의 논의를 위해 운영되던 「반상회」가 「주민자치회」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

3. 주요골자

- 0 명칭변경 : 반상회 → 주민자치회(안 제7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“ 반상회”가 “ 주민자치회”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탄력적으로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0 1999. 7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